

[채무조정 요청서 및 채무조정안]

1. 신청인 기본정보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	
홍길동	00. 00. 00	010-0000-0000	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7	
직업	월평균 소득(A)	월평균 생계비(B)	금융비용(C) (타 대출 상환액)	가용소득(D) (D=A-B-C)
회사원	200 만원	150 만원	10 만원	40 만원

※ 월평균 소득(A) 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 등의 합산을 말합니다.

※ 월평균 생계비(B) : 한 달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.

2. 채무조정 요청대상

최초 대출회사	회원번호	대출일자	총 채무금(원)
00000주	000000	00. 00. 00	000000 원

3. 채무조정 요청사유

☐ 실적	☐ 폐업	☐ 질병 및 사고	☐ 소득 감소
☐ 기타(사유: 그 외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사유에 대하여 기재)			

4. 채무조정 요청사항(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미기입 가능) (단위 : 원)

구분		조정 내용	
상환 유예	(Y / N)	희망 유예기간	
		3 개월	
원금 감면	(Y / N)	원금	
		채무조정 전	채무조정 후
		200 만원	200 만원
이자 감면	(Y / N)	이자	
		채무조정 전	채무조정 후
		1,000 만원	500 만원
상환방법 변경	(Y / N)	상환방법	
		변경 전	변경 후
		일시납부	분할납부
기타 사항	(Y / N)		

5. 필요서류(제출한 서류에 체크표시)

☐ 채무조정 요청서 및 채무조정안
☐ 신분확인 서류(신분증 등)
☐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☐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(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명 기재)
☐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사고, 질병, 경조사 등 관련 증명서류명 기재)

※ 회사는 채무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서류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6.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

- 채무조정 요청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 -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.
 1.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 2.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
 3.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 -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1.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 2.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 3.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 -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,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.
 -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.
 - 본 채권금융회사 채무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 채무 등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상담을 권해드립니다.
- ※ 본 서류의 '4. 채무조정 요청사항'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상기 필요서류 외에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※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, 즉시 당사로(☎02-2008-3333)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,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. 이에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

[illegible]

신청인 : (인)

브라보캐피탈앤드대부주식회사 귀중